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581,724,965 | 17,451,749 |
| 일반회계 | 521,662,052 | 15,649,862 |
| 특별회계 | 60,062,913 | 1,801,88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50,367,977 | 1,511,039 |
| 상수도공기업 | 23,198,378 | 695,951 |
| 하수도공기업 | 27,169,599 | 815,088 |
| 기타특별회계 | 9,694,936 | 290,848 |
| 주택사업 | 2,775,090 | 83,253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| 210,448 | 6,313 |
| 의료급여기금운영 | 1,105,739 | 33,172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| 596,050 | 17,882 |
| 공영개발사업 | 402,403 | 12,072 |
| 농공지구조성사업 | 3,503,207 | 105,096 |
| 기반시설 | 18,787 | 564 |
| 장기미집행 | 504,833 | 15,145 |
| 수질개선 | 578,379 | 17,351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“채무부담행위조서” 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998,71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포함)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,900,000 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